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7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 어기구·허종식·김정호

박희승 • 박 정 • 이개호

황 희 · 오세희 · 이정문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,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적용을 배제하고 있음.

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,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 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%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6조제5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6조제5항 단서 중 "제2항제2호 및 제3호"를 "제2항제2호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부과·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~	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	⑤
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	
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	
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	
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	
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	<u>제</u> 2항제
<u>2호 및 제3호</u> 는 세율을 가감할	<u> 2호</u>
수 없다.	